

창원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4가단195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1. A

소송대리인 B

2. C

소송대리인 D

피 고 E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79.92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4. 5. 1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단,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‘월 300,000원’에서 ‘월 100,000원’으로 감축하였다)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정신구

별지